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가단5068103 판결 [구상금 등 청구]

전 문

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손계룡, 신혜진

피 고 A

변론 종결 2019. 8. 22.

판결 선고 2019.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72,871원과 그 중 27,374,940원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19. 4. 2.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72,871원과 그 중 27,374,940원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원고는 2019. 7. 16. 피고 B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전부 개정된 것)에 따라 2019. 6. 1.부터의 법정이율은 100분의 12로 한다.

판사 김태업

청 구 원 인

1. 신용보증 및 대출실행

원고는 피고 A(상호 : C)과 수출보험 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피고 A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고 회사로 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갑 제1호증 수출신용보증서), (갑 제2호증 신용보증 약정서).

신용보증약정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한도	보증기간	대출은행
1	D	금27,000,000원	2015. 07. 15. ~ 2018. 7. 13.	E은행

2. 대위변제와 구상채권의 발생 및 연대보증

피고 A은 2018. 6. 7. 원금 연체로 인하여 소외 은행에서 사고발생통보를 하여옴에 따라 원고는 위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원리금 및 이자를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 A에게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사고발생통지서), (갑 제4호증 대위변제증서).

대위변제내역

	보증서 번호	보증한도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1	D	금27,000,000원	2018. 10. 15.	27,374,940원
	합 계			27,374,940원

3. 지연손해 이자율

피고 A은 원고와의 위 신용보증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으로 채권자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행, 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갑 제2호증 신용보증약정서), 만일 피고 A은 위 채무 이행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금액에 원고가 지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각 지급기로 하였으며 원고의 국내보상요령 제26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지연손해 이자율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각 연10%입니다(갑 제5호증 국내보상요령).

4. 채권보전비용 및 일부 회수금 상계

원고는 피고 A에게 구상하기 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채권보전비용이 소요되었는바 이에 대한 채권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6-1내지 6-3호증 각 비용청구서).

채권보전비용

	채권보전조치	채권보전비용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51104 부동산가압류	230,800원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51556 부동산가압류	248,000원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51789 가등기상의권리처 분금지가처분	341,040원
	합 계	819,840원

한편 원고는 2018. 9. 18.경 피고 A으로부터 21,909원을 회수하였는바 이를 위 비용에서 공제할 경우 잔존 채권보전비용은 금797,931원(819,840원-21,909원)이 되고, 원고가 변제한 대위변제금과 합산할 경우 청구액은 금28,172,871원(27,374,940원+797,931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

피고 A은 사고 발생 전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사업체의 자금흐름이 어렵고 자금 압박으로 인하여 회복이 어려울 것임을 인지하고 원고 및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연대보증 및 대위변제에 따른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일인 2018. 6. 7. 원금 연체 후 한 달 뒤인 2018. 7. 1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게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게 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고유번호 F
[토지] 경상북도 칠곡군 G					
2		경상북도 칠곡군 G	권	1650평방미터	면적단위환산 2002년4월18일 등기
15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	2018년7월16일 제16658호	2018년7월16일 매매계약	가등기권자 B 대구광역시 달성군 H I 호	

즉, 피고 A은 영업부진 등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경영난에 봉착하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추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에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수출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그와 같은 사태에 이르면 원고에게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을 예상하여 수출신용보증사고 발생일인 2018. 6. 7. 원금 연체 한 달 뒤인 2018. 7. 16. 매매계약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은 이미 원고가 구상권 행사가 임박하였거나 장차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다64792판결) 실제로 그 개연성은 현실화되어 피고 회사는 경영 악화되어 연체가 되었고 원고는 채무를 변제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피고 A은 피고 B로 하여금 2018. 6. 7. 신용사고 발생 한 달 뒤인 2018. 7. 16. 별

지목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각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 A의 적극 재산을 감소시키고 원고 및 타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해하며 공동담보의 부족 및 상실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등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해행위라 할 것이며, 그 악의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참조).

더불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호 판결).

따라서 피고 B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A과 2018. 7. 16.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6. 관할합의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에 의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길 때에는 원고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7.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얻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별 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칠곡군 G 전 1650㎡ 끝.